



외국인
창업 상담
사례집

CONSULTING CASE BOOK FOR
FOREIGN **START-UPS**

CONTENTS

I. 창업 및 회사 설립

- 01.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허가를 받지 못할 때 08 - 08
- 02.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은? 08 - 09
- 03.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10 - 10
- 04.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한국법인 설치) 10 - 12
- 05.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지점 설치) 12 - 13
- 06.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연락사무소 설치) 14 - 15
- 07.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15 - 16
- 08.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16 - 18
- 09.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기술창업) 18 - 20
- 10.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학위 취득자) 20 - 21

II. 회사운영

- 11. 사업자가 알면 좋은 세금관련 정보는? 24 - 25
- 12.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란? 26 - 26
- 13. 외국인 고용을 위한 요건? 27 - 28
- 14. 법인 설립 후에 알아야 될 사항 28 - 29

III. 기 타

- 15. 유학생의 외투기업 설립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32 - 32
- 16. 법인등기가 늦어져 문제가 생긴 경우 32 - 33
- 17. 독점판매권과 지점과의 차이 33 - 34
- 18. 해외기업의 한국 내 통장 개설 방법은? 34 - 34
- 19. 창업비자(D-8-4)에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은? 35 - 35
- 20. 거주사실증명서란? 36 - 36
- 21. 아포스티유란? 36 - 37

외국인 창업 상담 사례집



CONSULTING CASE BOOK FOR
FOREIGN **START-UPS**



I. 창업 및 회사 설립

01.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허가를 받지 못할 때
02.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은?
03.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04.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한국법인 설치)
05.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지점 설치)
06.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연락사무소 설치)
07.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08.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09.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기술창업)
10.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학위 취득자)

I. 창업 및 회사 설립

Q.01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허가를 받지 못할 때

D씨는 한국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중에 있다. 투자신고와 송금을 완료하고, 법인등기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와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증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A. 일반음식점의 사업업종은 여러 가지로

일반음식점이기는 하지만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재료수급을 위해 무역업을 동반해야 할 경우나, 기타 관심이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설립준비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목적)을 정관상에 올리는 것이 좋다.

A. 최초 사업자등록증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서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때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영업허가를 위해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정관상에 있는 사업(목적)중에서 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A.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고, 비자를 신청한다. 비자를 받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과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므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에 필요한 조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영업활동을 하면 된다.

Q.02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은?

E씨는 2009년부터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시작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하여 5천만원 가량을 투자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외국인 단독의 개인사업자는 기업투자(D-8)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외국인 개인사업자에게는 더 이상 기업투자(D-8) 자격의 취득 또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출입국에서는 무역경영(D-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사업 확장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체류자격을 유지 하려고 한다.

A.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인하여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이 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기존 투자한 5천만원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자본금이 1억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신고서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도 최초투자신고 한 5천만원만 기입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추가투자가 필요하다.

A. 법인전환시 시작은 투자신고부터

이미 투자신고를 했지만 투자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투자 전에 투자신고를 하고 투자금을 들여와야 되며, 이때에는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신고하고, 기존에 투자신고를 한 금액은 서류상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차액만큼의 투자금액만 송금을 받으면 된다. 단,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시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차액과 실제 개인사업주가 자본금으로 가용가능한 자금을 생각하여 투자신고 금액이 1억원이 넘게 잘 결정해야 한다.

A.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같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시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은 현물출자나 양도양수를 통해서 법인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실제 개인사업의 사업주가 현물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실제 가용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가의 돈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로 설립한다는 접근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좋다.

A. 개인사업과 법인의 차이점 이해가 필요함

개인사업과 법인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운영이나 형태에 대해서 준비없이 설립을 한다면, 법인운영시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하는 인격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회사 개인은 개인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세금 역시 법인의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때 내는 개인소득세를 내야한다. 또한 법인의 돈은 법인의 사업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투자가 자신이 직접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작단계에서 이 차이점을 서울글로벌센터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관련판례:

개인사업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관련(대구지법 2010구합4034)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텝리카 국적으로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판결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

⇒2심(대구고법 2011누1970, 원고항소 기각), 3심(대법원 2011두30809, 원고 상고 기각)

Q.03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외국기업인 G사는 한국에 진출할 계획인데,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법을 알아본 후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

A. 한국 진출은 사업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해외본사와 한국에 설립이 되는 사무실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를 만들려는 구조를 먼저 생각해서, 알맞은 형태로 진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대표자도 본사에서 파견을 할 것인지 한국에서 고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생각해야 하며, 대표자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A. 한국 진출이유를 결정해야 한다.

무작정 한국으로의 진출방법을 찾는 것 보다는 왜 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진출의 이유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시장조사 등의 보조적 활동인지에 따라 다른 접근이 있다. 이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기 이유에 맞는 사무실을 설립한 후 다른 형태의 사무실을 다시 설립할 수 있다.

A. 한국 진출의 방법

외국법인의 한국 진출의 방법은 지사(자회사)의 설립 → ②지점설립 → ③연락사무소 설립이 있다.

1. 현지법인 : 한국에 거주하는 국내법인을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지점 : 비거주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위해 설립한다.
3. 연락사무소 : 수익이 생기지 않는 비영업적 활동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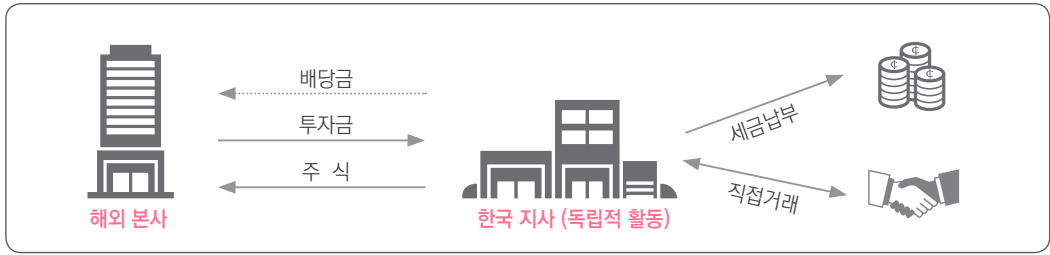
Q.04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한국법인 설치)

해외에 있는 기업 H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때 대표자는 본사에서 파견할 것인지 한국에서 고용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A. 외국인직접투자법에 의거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외국인직접투자자는 투자신고를 통해서 가지고 온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자의 표준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치를 하며, 이렇게 설립된 한국법인은 본사의 아들과 딸과 같은 자식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한국법인은 한국에 있는 독립적인 형태이다.

(정관의 사업목적에 본사에 의존되지 않는다.) 이때 최소투자 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요건 (투자금 1억원 이상, 지분 10%이상 보유) ※ 자회사 자본율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사, 관계사로 구분될 수 있다.

A.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회사의 설립 방법



① 투자신고

- 신고접수기관 : 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서(각 기관에서 교부) - 본사 대표의 실명확인증(여권)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② 투자자금 송금

- 세관 휴대반입 또는 외국환은행 ○ 송금인: 외국인투자기업
- ※ 송금완료 후에는 송금기록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잔액 증명서가 발급된다.

③ 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

④ 법인등기

- 준비서류
 - 본점 대주주의 거주국 관공서 발행 거주증명서
 - ※ 대주주가 해외 회사이므로 본사의 실체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 등)
 - 한국 대표자의 거주국 관공서 발행 거주증명서
 - ※ 한국인 또는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 필요

⑤ 관할구청 또는 유관기관의 인·허가

- 인허가 필요시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

⑥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서 교부) - ⑤의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 등기부등본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 ▷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⑦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등록기관 : 최초 투자신고기관(외국환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⑧ 기업투자비자(D-8) 신청 ※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 신청기관 :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 상기 ⑦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관공서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후 해당 국가 한국영사의 확인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
 - ※ 위임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다.

Q.05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지점 설치)

해외에 있는 기업 이 비거주상태에서 영업활동을 위한 지점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대표자는 본사에서 파견할 것인지 한국에서 고용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A. 지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지점의 활동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 의존하는 활동을 한다. 지점의 사업 활동은 본사의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과 같은 사업 활동만을 해야 한다. 또한 지점의 설립은 본사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는 본사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지점대표를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 또는 활동에 제약이 없는 비자(F-2, 4, 5, 6)소지자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다른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 고용이기 때문에 지점의 상태가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때 회사의 업무와 고용되는 외국인의 경력 및 학력이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지점설치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를 본점에서 만들기 때문에 문화권이 다른 국가에 본점이 존재하면, 설치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A. 지점 설치 방법



① 설치신고

- 신고접수기관 : 은행
- 제출서류
 - 외국인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 9-8호 서식)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본사 대표의 실명확인증(여권)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 ※ 설치신고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된다.

② 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③ 지점설치등기**

- 본점준비서류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본사 이사회 결의서
 - ※ 이사회 결의서 기재 필수 사항
 1. 지점설치 결의 및 지점의 위치(국가 및 도시까지 기재)
 2. 한국 지점대표 임명 사항(이름, 국적, 생년월일, 주소 기재)
- 본사 대표 준비서류
 - 본사 대표의 본국 거주증명서
- 한국 지점대표자 준비
 - 지점대표 임명을 승낙하는 취임승락서
 - 지점 대표자의 거주증명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
 - F-2, 4, 5, 6 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
 - 순수외국인의 경우 본국의 거주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서 교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⑤ 주재투자비자(D-7) 신청 ※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 신청기관 :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 상기 ④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관공서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 후 해당 국가 한국영사의 확인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
 - ※ 위임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다.

Q.06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연락사무소 설치)

해외에 있는 기업 J가 한국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기 전에 한국 시장을 조사하려고 한다. 또한 기업 K의 경우 모든 서비스가 해외의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광고만을 진행하려고 한다.

A.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을 위해서는 연락사무소가 적합하다.

한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보조적인 기능만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가 적합하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 광고, 정보수집 등의 보조적인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해야하며, 판매 등의 수익발생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다.



A.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보조적인 비영업적인 활동이며,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는 본사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지점대표를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 또는 활동에 제약이 없는 비자(F-2, 4, 5, 6)소지자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다른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 고용이기 때문에 지점의 상태가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때 회사의 업무와 고용되는 외국인의 경력 및 학력이 관련이 있어야 한다.

A. 연락사무소설치 방법



① 설치신고

- 신고접수기관 : 은행
-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 9-8호 서식)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본사 대표의 실명확인증(여권)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 ※ 설치신고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된다.

② 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

③ 고유번호증 신청

- 등록기관 :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신청 신청서(세무서에서 교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④ 주재투자비자(D-7) 신청 ※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 신청기관 :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 상기 ⑥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Q.07 외국인인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L은 우연한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본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외국인 창업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전반적인 방법을 알아본 후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

A.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수행하는 회사의 형태 및 아이템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비자 상태에 따라서 바로 사업을 시작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투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기술을 인정받아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개인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투자금이 달라지며,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금액 및 시작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A. 소지 비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F-5),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한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 회사의 형태를 법인이나 개인사업 중에서 결정하여 설립 후 운영하면 된다.
 - ※ 개인사업을 선택하면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프랑스, 아일랜드, 영국)¹⁾), 방문취업(H-2) 소지자
 -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출국하여 다른 비자상태로 입국을 하여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운영이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 ※ 현재 체류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출국한 뒤에 준비한 사업장에 관련된 서류로 일반상용비자(C-3-4)비자로 입국 한 뒤에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위에 나열된 비자 이외의 비자 소지자
 - 외국인직접투자를 이용하는 방법 : 최소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의 투자금, 개인사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 창업비자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출원 또는 이와 동등하게 법무부에서 인정받은 경우 이를 활용한 기술창업을 통해 창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A.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

- 한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후 유학(D-2) 및 구직(D-10)비자를 소지한 경우
 -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²⁾. 이때 투자금중 5천만원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직접 송금 받은 외국환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최대 5천만원 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³⁾
 - ※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해서 설립되는 회사가 아니다.
- 한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후 유학(D-2) 및 구직(D-10)비자를 소지한 경우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⁴⁾ (OASIS-1 부터 8)' 에서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는 석사 취득자와 같은 조건으로 개인사업의 경영이 가능하다.

A.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를 활용한 기술 창업을 하는 경우는 특허보유, 출원 및 법무부에서 인정한 이와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후에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8)' 에서 점수를 취득하여, 투자금액 없이 창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기본요건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8)' 에서 총 80점 이상의 점수 취득
 - ※ 이때 필수 항목에서의 점수를 포함해야 한다.
 - 학사이상의 학력 (학위국가, 전공 불문)
 - 법인설립(대표자)
 - ※ 법인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① H-1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써 위의 국가는 비자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용한 경우 3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③ 중국의 경우 중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5만불 이상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④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Q.08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M은 한국에서 본인의 조건과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이용한 방법이 적합한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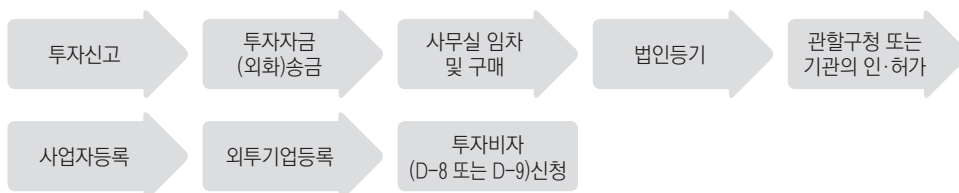
A.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방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투자금액을 들여와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운영하려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최소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최소투자금액 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A. 투자금액을 들여올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외국인 M은 개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즉 개인투자이며 이때 지켜야 될 조건은

-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 : 타인명의로의 송금은 외국인직접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해외에서 송금이 되어야 한다 : 국내자금은 외국인직접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외국환으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 : 환전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회사의 설립 방법**① 투자신고**

- 신고접수기관 : 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서(각 기관에서 교부)
 - 실명확인증(여권)
 - 위임장(대리신고인 경우)

② 투자자금 송금

- 세관 휴대반입 또는 외국환은행
- 송금인 : 외국인투자자
- ※ 송금완료 후에는 송금기록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잔액증명서가 발급된다.

③ 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④ 법인등기**

- 준비서류
 - 투자자 거주국 관공서 발행 거주증명서
 - ※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
 - ※ 개인사업의 경우 생략

⑤ 관할구청 또는 유관기관의 인·허가

- ※ 인허가 필요시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

⑥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서 교부)
 - ⑤의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 ▷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⑦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등록기관 : 최초 투자신고기관(외국환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신분증

⑧ 기업투자비자(D-8) 신청 ※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 신청기관 :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 상기 ⑦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관공서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후 해당 국가 한국영사의 확인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
 - ※ 위임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다.

Q.09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기술창업)

외국인 N은 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고 개발을 마쳤다. 이렇게 개발한 제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A. 창업비자는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보유 또는 출원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비자는 점수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점수는 필수항목, 선택항목으로 구분되어있다. 이때 필수항목에서 점수를 얻는 것이 창업비자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A. 창업비자 점수제도 및 창업비자 요건

- 기본요건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8)' 에서 총 80점 이상의 점수 취득
 - ※ 이때 필수 항목에서의 점수를 포함해야 한다.
 - 학사이상의 학력 (학위국가, 전공 불문)
 - 법인설립(대표자)
 - ※ 법인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점수 항목
 - 필수항목 및 점수 (210점) : (1개 이상 필수)

구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 재산권의 공동 발명자		연구(E3) 자격으로 3년 체류	⑤, ⑦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배점	80	50	20	10	5	3	7	각 25

- 선택항목 및 점수 (130점)

구분	②, ③	①, ④, ⑥	자본금 1억 이상	학 력		토픽3급 ↑ 또는 KEPI이수
				국내·외 대학 박사 학위 소지	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배점	각 25	각 15	15	10	5	10

- ①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 ②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 ③ 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 ④ 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 ⑤ 발명·창업대전(OASIS-6) 1~3위 입상
- ⑥ 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 ⑦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 ※ 서울산업진흥원(서울글로벌센터)의 독립운영프로그램은 각기 OASIS-4(외국인창업대학), OASIS-5(비즈니스 코칭), OASIS-6(창업아이디어 오디션), OASIS-7(인큐베이션)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이민재단, 창업진흥원이 독립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ipcampus.kr/oasis-visa에서 연간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A. 기술창업분야 구직비자 요건

창업비자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필수항목의 점수를 얻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구직비자(D-10)를 발급받아서 창업비자를 준비할 수 있다.

- 기본요건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8)' 에서 총 50점 이상의 점수 취득
 - 학사이상의 학력 (학위국가, 전공 불문)
 - 사업계획서
 - 창업과 관련된 제반활동 증명 (OASIS 참가, 지식재산권 준비 및 출원, 법인설립 준비 등)

A. 창업비자제도를 활용한 사업설립 순서



- ① 비자점수 획득
 - ※ 필수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② 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
- ③ 법인등기
 - 준비서류
 - 투자자 거주국 관공서 발행 거주증명서
 - ※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

④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서 교부)
 -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 ▷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 인허가 필요시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해야 한다.

⑤ 창업비자(D-8-4) 신청

- 신청기관 :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 상기 ④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Q.10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학위 취득자)

외국인 O는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출포장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법인의 설치를 생각하였으나, 법인과 개인사업과의 개념이 쉽지 않고, 사업 추가와 사업장이전이 간편한 개인사업을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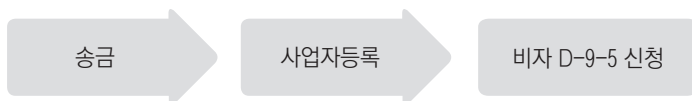
A. 국내학위 취득자의 개인사업은 더 작은 투자금액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다⁵⁾. 하지만 국내 학위 취득자의 경우 1억원의 투자금액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이에 해당되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단, 이렇게 설립된 개인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다⁶⁾.

A. 국내학위 취득자의 개인사업 창업비자 요건

- 기본요건
 -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소지자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1억원 이상을 투자⁷⁾
 - ※ 이때 1억원의 투자금중 최대 5천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에서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석사 소지자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A. 국내학위 취득자의 개인사업 설립 순서



① 투자자금 송금

- 송금의 조건
 - 해외에서 송금 되어야 한다.
 -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한다.
 - 투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8)
- ※ 송금완료 후에는 송금기록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잔액증명서가 발급된다.
- ※ 국내조성자금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최대 5천만원), 국내조성자금에 대한 잔액증명서 및 통장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② 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

③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서 교부)
 -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 ▷ 외국인등록증
 - ※ 인허가 필요시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해야 한다.

④ 무역경영비자(D-9-5) 신청

- 신청기관 :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 상기 ③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투자신고후 외국인 본인이 해외에서 외환으로 직접 들여온 투자금을 말한다.

⑥ 자본금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들여와야 하나,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즉, 투자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⑦ 해외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된 외환을 말한다.

⑧ 제 3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송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창업 상담 사례집



CONSULTING CASE BOOK FOR
FOREIGN **START-UPS**



II. 회사 운영

11. 사업자가 알면 좋은 세금관련 정보는?
12.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란?
13. 외국인 고용을 위한 요건?
14. 법인 설립 후에 알아야 될 사항

Q.II 사업자가 알면 좋은 세금관련 정보는?

외국인 Q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A.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는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nts.go.kr)에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세금처리는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사업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정보와 외국인 세무상담사례집등의 전문적이며 유용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다. 특히 국문,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신고, 납부, 증명발급 등은 홈택스(hometax.go.kr)이루어 진다.

A.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조회 등이 가능하다.

- 기업 인터넷 뱅킹을 사용 중인 경우 :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기업고객으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 발급
- 기업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발급

A.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의 기본 상식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알아야할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이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며, 모든 물건(서비스)에 대해 부가된다. 부가세를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을 사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단, 물건을 구입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대신에 금액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일괄적으로 매출(판매)에 대해 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물건 구매자를 대신해서 내는 것이다.⁹⁾

○ 부가가치의 신고 및 과세기간

- 법인사업자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내용
1기 예정신고 4.1 ~ 4.25	1.1 ~ 1.31 경영성과
1기 확정신고 7.1 ~ 7.25	4.1 ~ 6.30 경영성과
2기 예정신고 10.1 ~ 10.25	7.1 ~ 9.30 경영성과
2기 확정신고 1.1 ~ 1.25	10.1 ~ 12.31 경영성과

- 개인사업자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제2기 7.1 ~ 12.31	1.1 ~ 6.30 간의 사업실적 7.1 ~ 12.31 간의 사업실적	7.1 ~ 7.25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매출액의 10%-매입액의 10%

○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매입액의 1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각기 다르다.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도 1년간의 사업 활동으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 신고 및 납부기간

- 종합소득세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은 6월 30일까지) 소득세는 각기 다른 상황 (기장 및 비기장,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경비 등을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여긴다.

• 기장한 사업자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기장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세의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1,940만원

- 법인세 : 사업 연도를 종료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¹⁰⁾

법인세 역시 매출에서 원가와 비용 등을 뺀 순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율은 일률 과세이며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⑨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간접세)

⑩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다.

Q.12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란?

외국인 R씨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보험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싶다.

A. 4대 보험은 의무 사항이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A. 4대 보험의 종류

4대 보험은 ①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료보험, ② 사망, 노령에 대한 국민연금, ③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④ 업무상의 재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 보험요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 4대 보험 요율표

종 류	부담주체 및 요율		
	전체	근로자	사용자(회사)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6.07%	3.035%	3.0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50%	50%
고용보험	실업급여	1.3%	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규모별 차이	사업규모별 차이
산재보험	업종별 차등적용 전액 사업주부담		

※ 최신자료는 4insu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A. 4대 보험의 가입 및 정보 확인

4대 보험의 가입은 4대사회보험 각 지사(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또는 4insure.or.kr를 통하여 가능하다.

○ 상세내역 문의

보험가입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
전 화 번 호	국번 없이 1335	1577-1000	1588-0075
홈 페이지	www.nps.or.kr	www.nhis.or.kr	http://total.kcomwel.or.kr

Q.13 외국인 고용을 위한 요건?

외국인 S씨는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과의 업무진행을 위해 자국 국민을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자국 국민이나 한국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A. 외국인 고용에는 필수 조건이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갖추어야할 필수 조건이 있다.

○ 국민고용자의수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한 국민고용자가 5명이 넘어야 한다. 이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기준이며 이는 한국에 설립된 모든 회사에 해당된다. 국민고용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업종별로 상이한 고용업체 요건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년도 매출액

기본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은 있어야 한다. 업종별로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

직업에 따라서 각기 다른 취업비자가 발급이 될 수 있다.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이며, 통상적인 취업비자는 E-7이다. 또한 E-7의 경우 사전 85개의 직종별 세부기준이 있으며, 여기에 적합한 요건과 추가제출 서류가 있다.

○ 고용을 할 근로자와 직업이 관련이 있는지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공과 직업이 같지 않더라도 고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전공과 이전 경력에 고용하려고 하는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 저임금 편법 활용을 방지해야 함

저임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내국인의 60%미만이거나(연봉 3천만원 이상자), 월 150만원 미만(연봉 30만원 미만자)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A. 외국인고용의 바른 접근은 회사가 출입국에 연락을 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고용이 될 외국인이 취업비자 요건을 확인한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회사의 컨디션, 정확한 직업의 정의 및 고용하려는 사람의 정보(경력 및 학력)를 가지고 출입국에 직접 알아보는 것이 알맞은 접근이다.

A. 특정활동(E-7)비자의 제출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cm×4cm) 1배, 수수료
- ② 회사 설립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③ 고용계약서 사본
- ④ 외국인 고용 필요 입증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¹¹⁾
 - 고용추천서 (필요한 경우)

¹¹⁾ 외국인 활용계획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korea.go.kr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A. 직업에 따른 예

○ 주방장 및 조리사

- 직종 설명 : 조리사와 조리실을 감독하거나 직접 음식을 만드는 자
- 직업예시 : 양식, 중식, 일식 등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요리사
 - ※ 한국인으로 대체가 가능한 한식, 커피, 전통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식당의 요건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매출액(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 식 당	100㎡ 이상	1억원(500만원)이상	3명
일반식당	60㎡ 이상	6천만원(300만원)이상	2명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 식당	30㎡ 이상	4천만원(200만원)이상	1-2명 (면적 151㎡ 이상,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시만 적용)

○ 해외영업원

- 직종 설명 : 해외진출 관련 영어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는 활동을 하는 자
- 직업예시 :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영업원
- 회사의 요건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를 준용 (최소 5명이상), 외국인투자기업,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 업체는 특례적용
- 기타요건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무역협회)

Q.14 법인 설립 후에 알아야 될 사항

외국인 T씨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5년째 운영하고 있다. 5년 동안 T씨의 회사는 사업장을 여러번 이전하였지만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T씨는 법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신고(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한 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 법인의 변동사항은 변동등기를 해야 한다.

변동등기를 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 있으나 다음의 사항들은 꼭 변동등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 법인대표자 이사의 경우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대표자의 주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등기 시에도 대표의 거주자증명이 필요한 것이다. 법인대표자의 주소 변경할 때 주소가 변경되는 시점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 법인주소 이전의 경우

법인본점 및 지점의 주소 이전의 경우는 반드시 변동등기를 해야 한다. 본점의 경우는 이전 후 2주 이내에 지점의 경우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등기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 이사회 변경에 대한 사항

이사회 변경에 대한 사항은 항상 신고가 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이 신고 되어야 한다.

※ 5년 동안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법인이 휴면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7년을 넘기는 경우 법인이 청산된다.

외국인 창업 상담 사례집



CONSULTING CASE BOOK FOR
FOREIGN **START-UPS**



Ⅲ. 기타

15. 유학생의 외투기업 설립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16. 법인등기가 늦어져 문제가 생긴 경우
17. 독점판매권과 지점과의 차이
18. 해외기업의 한국 내 통장 개설 방법은?
19. 창업비자(D-8-4)에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은?
20. 거주사실증명서란?
21. 아포스티유란?

Q.15

유학생의 외투기업 설립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에 사업성이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여 창업을 결정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체류자격의 변경 후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인등기를 끝내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였으나,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었다.

A. 체류자격변경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방법의 가장 마지막 단계

회사설립의 과정에서 체류자격은 상관이 없다.

외국인이 사업을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하다. 유학생의 신분으로는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들어온 투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야 체류자격의 변경이 가능하다.

즉,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A.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서류를 설명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외국인전자정부(hikorea.go.kr)에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을 공개하고 있으며, 안내메뉴얼에는 각 체류자격별 활동범위, 해당자, 기본요건 및 신청서류가 나와 있다. 이를 설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Q.16

법인등기가 늦어져 문제가 생긴 경우

B씨는 한국에서 요식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중에 있다. 1억 원 상당의 투자신고를 하고 송금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장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 되었다. 사업장을 찾고 계약을 위해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였고, 이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은행에 갔으나,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의 발급이 거부되었다.

A. 등기소의 잔액증명의 인정 기간은 발급 후 15일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이라면, 통장잔액증명으로 자본금증명을 한다. 이때 잔액증명의 유효기간은 15일이므로, 15일이 지나버리면 잔액증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 즉, 돈을 사용하고 다시 잔액증명을 발급받아버리면, 사용한 돈을 제외한 현재 통장에 있는 잔액만이 증명이 되어버린다. 즉, 최초 잔액증명의 발급 뒤에는, 자본금으로 사용할 돈을 사용하고 법인등기까지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최초 증명 받은 자본금을 가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A.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최소금액은 1억 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고, 투자금 1억이 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1장, 2조) 현재 상태는 자본금으로 사용해야할 금액을 사용하고 다시 잔액증명을 발급 받았으므로, 자본금이 사용한 만큼 줄어있는 상태이다.

A. 추가송금과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요건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신고를 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요건에 맞는 최소투자금액인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신고하였으나, 잔액증명에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어 버린 경우이므로, 부족한 만큼 투자송금을 하고 잔액증명을 발급받아 증자를 하여, 자본금이 최소 외국인 직접투자 요건에 맞는 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를 위해 사용한 돈은 회수가 가능 하다.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0.10.6.]

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 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이나 지분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자로 본다.

<개정 2010.10.5.>

Q.17 독점판매권과 지점과의 차이

C씨는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다년간 거주를 하던 중 한국시장에는 없는 제품을 발견하고,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독점판매권을 확보하였다. 이후 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한국에 지점을 설립 하여 지점장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며 운영을 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지점 설립 이 거부 되었다.

A. 지점설립의 결정은 회사에서

법인의 의사 결정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그중 지점설립의 설치 및 폐쇄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즉, 지점장이 되고 싶은 개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서 지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지점설치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점장의 선임 또한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접근 방법은 그 자체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또한 본점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도 본점과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판매권만으로는 판매권을 증명할 서류 이외에는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

많은 수의 외국인이 사업을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투자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해외에 존재 하는 회사의 지점을 본인설립하고 본인이 지점장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활동 이다.

A. 지점의 대표자로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다만,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A. 지점은 본점의 일부분이다.

외국기업이 사업을 설립하고, 대표자를 파견하여 사업을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투자금액이 없을 때 지점을 설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지점이 최소투자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점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돈의 이동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지점의 영업활동 및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또한 지점의 수익은 본점의 수익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소자본금은 없다 하더라도 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다.

Q.18 해외기업의 한국내 은행계좌 개설 방법은?

외국법인 F는 한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자회사의 자본금이 작은 편이며, 자본의 회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표자도 한국인을 고용할 생각이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소액의 자금을 이용하여 한국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본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A.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외국법인이 한국에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외국법인의 정식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외국법인의 존재여부 및 대표자의 실명확인이 증명되어야 한다.

A. 외국법인의 존재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료를 준비

외국법인의 존재여부는 당연히 해당국가의 서류들을 가지고 와야 한다. 해당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그 법인이 그 국가에 설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대리인이 이를 처리할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및 신분증)와 공증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관공서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후 해당 국가 한국영사의 확인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
- ※ 위임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다.

Q.19

창업비자(D-8-4)에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은?

외국인 P는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고, 창업비자 제도를 통하여 창업을 하려고 한다. 창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 모든 지식재산권이 창업비자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각각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으며, 이 둘은 다시 몇 가지 항목으로 구별된다. 이 모든 항목이 창업비자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산권에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창업비자에서 인정이 되는 지식재산권이다.

A. 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 특허 : 창작물에 대한 고안을 말하며, 원천적인 핵심기술을 뜻한다. 대발명이라고도 한다.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관한 기술적 장치를 말하며, 개량기술 또는 소발명이라고도 한다.
 - ※ 이 둘을 특별하게 구별한 필요는 없다.
- 디자인 : 물건의 디자인을 말한다.

○ 저작권

- 저작권 : 문학, 예술 등의 창작권을 말한다.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배급하는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A. 창업비자 필수 점수

창업비자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9)' 총 360점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80점중에 필수 항목이 1개 이상 꼭 포함되어야 한다.

구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 발명자		연구(E3) 자격으로 3년 체류	⑤, ⑦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배점	80	50	20	10	5	3	7	각 25

⑤ 발명·창업대전(OASIS-6) 1~3위 입상

- ※ 서울글로벌센터, 한국발명진흥회가 1년에 1회 진행한다.

⑦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 ※ 창업진흥원이 1년에 1회 진행한다.

Q.20 거주사실증명서란?

외국인 U씨는 한국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국정부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가 필요하여 자국 정부에 문의하였더니 자국에서는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관공서가 없다고 한다. 자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거주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국에서 발급받지 못할 경우 거주사실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거주사실증명서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대표자의 주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등기시에도 대표의 거주사실증명이 필요한 것이다. 거주사실증명서에는 성명, 생일, 주소, 국적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관공서에서 발급된 서류를 말한다.

- 한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을 사용
-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사용
-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 발급 받은 서류를 사용한다.
 -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 :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신분증)를 본국에서 공증하여 사용한다.
 - ※ 위의 서류는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그렇지 않은 경우 본국 한국공관 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 ※ 또한 영어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한국어로 번역문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지만, 기타 언어의 경우 최소 영어까지의 번역이 필요하다.

Q.21 아포스티유란?

외국인 V는 한국에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다.

A.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지구촌의 국제화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될 때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서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한국은 2007년 7월 14일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 되었으며, 현재 (2015.12) 108개국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지 역	국가 / 지역
아시아, 대양주 (17)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유럽 (51)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미 (1)	미국
중남미 (25)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아프리카 (11)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3)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권한

- 협약 가입국이 자국 발행문서에 대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게 아포스티유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대상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은 해당 외국 정부에서 지정한 권한기관에서 그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A.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가가 아닌 경우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미가입 국가의 경우 관련 서류를 공증¹²⁾ 받아서 해당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용 할 수 있다.

¹²⁾ 본국 공증을 말한다.